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1.

발 의 자 : 김교홍 · 홍기원 · 장철민
문진석 · 이훈기 · 허종식
정일영 · 이재관 · 노종면
모경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,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·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라.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29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.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찰·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</p> <p>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. 다만,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국립호국원 가. ~ 다. (생략) 라. <u>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(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).</u> <u>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를 준용한다.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29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.</u> <u>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를 준용한다.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